

『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대·중·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(2015.11.20) 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해당 조문 전부 개정
  - ※ 유효기간 연장 : 기존 2015년 11월 23일 ⇒ 변경 2020년 11월 23일  
(안 제9조제7호·제8호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5조)
-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신설(안 부칙 제2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-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5.11.20에 개정된 것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 조항 유효기간을 당초 2015.11.23에서 2020.11.23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